

#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5. 7. 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## 1. 제안이유

-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도곡온천개발사업소는 한시적으로 화순온천개발사업소의 분소로 설치 운영하고, 동 개발사업소의 사업적 성격을 감안 존속시한을 '96. 12. 31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하여
- 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전문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제정근거

- 지방 12200 - 778 ('95. 5. 9)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기구.정원승인
- 법무 11250 - 179 ('95. 6.16)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관련조례안조치 지시

## 3. 주요골자

제2조에 사업소와 분소의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을 규정하고

제5조 ②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개정하였음.

#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

제1조 (설치) 화순군 온천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온천지구내의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 (사업소 및 분소) ① 사업소는 화순군 북면 옥리에 두고 도곡분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.

② 사업소는 북면 온천지구, 도곡분소는 도곡온천지구를 관할한다.

제3조 (업무)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관리
2.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
3. 사용료, 임대료, 부담금 등의 조정 부과 징수
4. 온천지구내 각종 금지행위의 지도 단속
5. 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6. 온천지구 개발, 관리,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7.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 (소장)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 (분소장) ① 분소에 분소장을 두며,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로 보한다.

②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6조 (공무원)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 (사용료의 징수) 온천수와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조례)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및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.
- ③ (존속시한)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 존속시한은 1996. 12. 31까지 한다.

# 검 토 보 고 서

## □ 조 례 명

-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## □ 주 요 내 용

1. 화순군 온천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와 도곡온천개발사업소를 통합 운영 ( 안 제 1 조 )
2. 도곡온천 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순온천개발사업소 내에 도곡분소 설치 ( 안 제 2 조 )
3. 사업소 및 분소의 관리 및 위치 ( 안 제 2 조 )
  - 사업소 → 북면온천지구 개발 관리 ( 화순군 북면 옥리 )
  - 분 소 → 도곡온천지구 개발 관리 (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)
4. 사업소 및 분소의 주요업무 ( 안 제 3 조 )
  -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
  - 온천지구 개발 관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  -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관리
  - 각종 사용료, 임대료,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
  - 기타 온천지구 개발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5. 소장 및 분소장 ( 안 제 4조, 5조 )
  -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(5급), 도곡분소장은 지방토목 6급 또는 지방건축 6급
  - 도곡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관장 및 소속공무원 지휘 감독
  -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존속 시한 1996. 12. 31 (안 부칙 제 3항)

## □ 개정 사유

- 지금까지 화순온천개발사업소와 도곡온천개발사업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소장의 직급이 불합리하고 (화순온천사업소 : 5급, 도곡온천사업소 : 6급) 운영면에서도 이원화되어 있어 온천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화순 및 도곡온천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, 동 조례를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조례 전면 개정

## □ 검토결과(의견)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내무부에서 기구 및 정원이 승인 (화순온천 : '87. 11. 25, 도곡온천 : '95. 5. 10 ),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순 및 도곡온천개발사업소의 조례를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 조례로 통합 개정코자 하는 (안)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